

제 614 호
1977. 7. 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윤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5444

시 보

차 례

◎ 조 제

제 1176 호 :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3
--------------------------------------------------	---

◎ 규 칙

제 1711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규칙중 개정규칙	4
----------------------------------------------	---

◎ 고 시

제 22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및지적승인	5
제 225 호 : 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변경및지적승인	5
제 226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6
제 227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6
제 22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일부변경및지적승인	7
제 229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지적승인	7
제 23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계속)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77

제 231 호 : 도시계획 시설 (도로) 신설및일부 변경 지적 승인.....	8
제 232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허가.....	9
제 233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10
제 234 호 : 도시계획 시설 (학교) 지적승인.....	10
제 235 호 : 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적승인.....	11
제 236 호 :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결정.....	11
제 237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지적승인.....	12

◎ 공 고

제 148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완료공고.....	12
제 153 호 : 도시계획 사업 (학교) 완료공고.....	12
제 162 호 : K, S 표시정지처분공고.....	13
제 163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 정지 지정공고.....	13
제 164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4
제 165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4
제 166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5
제 169 호 : K, 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15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 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1977년 7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76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비사업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1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무허가건물이라함은 1970년 6월 20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기존무허가건물과, 재산세의 납부등으로 공부상 1970년 6월 20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1970년부터 1972년 2월 24일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 수록되어있는 주거용 기존무허가건물은 1970년 6월 20일 이전에 존립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 4 조 본문을 1항으로하고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 (보조금지급액) ① 보조금은 건물 의 규모 및 형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균등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금의은 예산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968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무허가건물 양성화시체에 의거 제량승인을 받고 건축완료하였으나, 그 점용토지가 도시계획상의 계약만으로 인하여 주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건물

2. 1971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주택개량새마을 사업시책에 의거 제량승인받고 건축완료하였으나 그점용토지가 도시계획상의 계약만으로 인하여 주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7월 1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711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현업기관설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호중 기능직 및 고용원의 정원을 별표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능직의 직종별 등급별 정원

구 분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11 등급	계
운 수	9	72	129	109	28		347
운 전	25	27	29	11			92
전 기	5	6	6	7	13		37
통 신	3	3	7	3			16
신 호	3	3	8	8	3		25
전 화	4	7	14	13	18		56
기 공	1	5	8	4	4		22
선 로	2	2	6	7	11		28
영 선				1			1
창 고			1	5			6
계	52	125	208	168	77		630

고 용 원 직 종 별 정 원

직종구분	수위장	수위	운전원	전공	안내원	사진사	계도사	타자원	정리원(주)	청부	전달부	경비원	통신수	선로수	여객수	보안수	계
본부	1	5	8	1	1	1	3	4	12	2	1						39
현업			2	6	12				(33)			19	2	4	37	2	117
	1	5	10	7	13	1	3	4	45	2	1	19	2	4	37	2	156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22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도로)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와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41호(77.3.16)

의 권한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13

서울특별시장

○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대 로	1	13	35m	12,000	용 누 동	장 지 리	태 능 사 격 장 일 대 변 경 및 시 경 지 까 지 지 적 승 인 (변 경 = 1.620 m, 지 적 승 인 = 370 m)
변 경	"	"	"	"	"	"	"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25 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13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가 스 공 급 설 비	영 동 포 구 역 창 동 20, 목 동 15-6	17,111	8.636㎡증
변 경	(도시 가 스 공 장)	부 근 (김 포 토 지 구 획 정 리 지 구 546 구 획)	25,747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2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같이 결정및 일부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의 권한위임규정에
 ○ 도로변경조서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7. 13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별	폭 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10m	100m	신도림동907-35	신길동 448-8	
변경	"	"	"	"	"	신도림동 908-2	위치일부변경
기정	"	2	8m	90m	구로동 607-4	구로동 624-4	
변경	"	"	"	80m	"	"	위치일부변경

※ 변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27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건설부고시제 41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가. 학교결정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 7. 13
 서울특별시장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 고
신설	학 교 (중.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산 197의1 의 14 필지	84,645 (25,605명)	
"	학 교 (고 등 학 교)	관악구 신림동산 191의 5 의 17 필지	78,542 (23,759명)	
"	학 교 (중 학 교)	관악구 신림동산 189의 2 의 4 필지	17,402 (5,264명)	

별첨 : 도면생략

<p>◎서울특별시고시제 22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고 지적승인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p>		<p>제시호(77.3.16)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7.14 서울특별시 장</p>		
<p>가. 도시계획시설(학교)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학 교 (성신여자중.고교)	관악구 봉천동 산 70 의 1의 17 필지	32,033 (9,689.8명)	
변경	학 교 (중.고등학교)	관악구 봉천동 산 70 의 1의 4 필지	27,758 (8,394.7명)	감 1,393.1명
<p>※ 별첨 도면 생략.</p>				
<p>◎서울특별시고시제 229 호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3 호(77.7.1)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41 호(77.3.16)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p>		<p>지적승인 하였던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77. 7.15 서울특별시 장</p>		
<p>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학교(영광중학교)	월계동산 89 의 8 의 3 필	15,970 ㎡ (4,838)명	
<p>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23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 호(77.3.16) 권한 위임사항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1977. 7. 15

서울특별시장

c.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1		10 m	280 m	종암동25-12	종암동32	
"	"	"		"	120 "	" 24	" 23-3	
"	"	2		8 m	100 "	" 29-4	" 32-1	
"	"	3		6 m	470 "	" 25-4	" 32-1	
"	"	"		"	200 "	" 25-4	" 24-1	
"	"	"		"	80 "	" 23-3	" 31-1	
"	"	"		"	210 "	" 34-1	" 31-1	
"	"	"		"	220 "	" 산2-21	" 31	
"	"	"		"	180 "	" 산2-21	" 31	

도침도면 표시와 감을(도면생략)

㉕ 서울특별시고시제 23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신설 및 일부변경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6 호(77.7.11)로 결정 고시된 성동구 광장동 245번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 호(77.3.16)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7. 7. 15

서울특별시장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시점	중점	비고
기점	소로	2	8m	248m	광장동 248 - 4	광장동 244 - 1	위치변경
변경	"	2	8m	"	"	" 241 - 4	
신설	"	3	6m	126m	" 247	" 244 - 1	
"	"	3	6m	70m	" 244 - 2	" 244 - 1	
"	"	3	6m	66m	" 550	" 244 - 1	
"	"	3	6m	75m	" 385 - 1	" 658 - 1	
"	"	3	6m	96m	" 385 - 1	" 258 - 1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2 호

1977.7.19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5 호 (77.7.1) 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제 229 호 (77.7.15)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을 허가 하였기도 시 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도봉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89 의 8 호 의 3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영광중학교 이전
3. 사업시행면적 : 4,831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5 의 1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홍인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시행허가일
나. 준공예정일 : 77.9.30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현 소유자	
서울시 도봉구 월계동	89외8	임야	4,620	학교법인영광학원	
"	828	건	91	"	
"	95	임야	60	"	
"	96	임야	60	"	
			4,831명		

별첨 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33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1. 서울시 공고 제 119 호 (77.6.4)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 처분 계획 공람 공고한바 있는 금 호 제 2 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와 동법 제 65 조 규정에 의거 동 구역의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 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4. 본 고시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갈음 합니다.

1977.7.20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23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27 호 (77.7.13)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학교) 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7.7.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학교 (중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 197-1 호의	14 필지	84,645 (25,609명)	
신설	학교 (고등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 191-5 호의	17 필지	78,542 (23,759명)	
신설	학교 중학교	관악구 신림동 산 189-2 호의	4 필지	17,402 (5,264명)	
<p>※ 별첨도면 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35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고시제 221 호 (77.7.12) 로 결정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p> <p>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시던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7.20 서울특별시 장</p>					
가.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적승인 조서					
구분	단 지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이찬순단지	관악구 신림동 산 116-1 호의	1 필지	16,946 (5,126명)	
	신인우단지	관악구 신림동 산 169-2 호		19,609 (5,932명)	
	박명규단지	관악구 신림동 산 1-7 호의	3 필지	21,213 (6,417명)	
<p>※ 별첨도면 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36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p>					

제 41호 (77.3.16) 에 의한 권한 위 입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0 주차장 결정조서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21 서울특별시장
-------------------------------------------------------------------------------------------------------------	------------------------------------------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신설	성동구 구이동 59-36 외 4필지	3,666 (1,110명)	동부운수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37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137 호 (77.7.9) 로 일부 변경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41호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지적 승인조서	('77.3.16) 에 의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 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도 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21 서울특별시장
-------------------------------------------------------------------------------------------------------------------------------------------------------------------	---------------------------------------------------------------------------------------------------------------------------------

변경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주거→상업	동대문구 면목동 1049 일대	약 21,950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4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06 호 (76.12.2) 및 서울특별시 제 183 호 (76.8.9)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같은법 제 46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내역 학교명칭 : 경희대학교 사업시행지 : 회기동 산 4-1 외 3 필지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교황재단 이사장 사업기간 : 1976.9 - 1977.7 ◎ 서울특별시공고제 15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95 호 (76.11.6) 및 서울 특별시 고시제 164 호 (75.7.18)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같은법 제 46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16)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7.7.6 서울특별시장
------------------------------------------------------------------------------------------------------------------------------------------------------------------------------------------------------------------------------------------------------------------------------------------------------------------------------------	-----------------------------------------------------------------------------------------------------------------------------------------------------------------------------------------------------------------------------------------------------------------------------------------------------------------------------------------------------------------------------------------------------------------------------------------------------------

가.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내역		
학교 명 칭	취경여자중고등학교	중 화 중 학 교
사업시행지	전농동 32 의 1	망우동 440-1
사업시행자	취경학원 이사장 황은순	서울시교육위원회교육감
사업기간	76.11.12 - 77. 3.31	75. 8.14 - 77. 2.15
<p>◎ 서울특별시공고제 162 호</p> <p>K.S 표시 정지처분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 27 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 정지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 처분을 해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p> <p>1977. 7. 11</p> <p>서울특별시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번호 : 746 허가일자 : 1972.12.30 제조업체명 : 동양전기산업(주) 대표자 : 양 제 범 소재지 : 강남구 봉납동 281 규격번호 : KSC 8507 		
<p>7. 품 명 : 적층건전지</p> <p>8. 처분일자 : 77. 4.29</p> <p>9. 해제일자 : 77. 7.11</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63 호</p> <p>환지제외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 지정공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공고 제 128 호 (77.6.14) 로 환지제외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 제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제외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7

서울특별시

<환지에정지변경지정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세 1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13,981.4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신사동 360-13 호의 59 필지

◎서울특별시 공고제 164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영동세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 3. 본 공고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7.

서울특별시

<환지계획변경공람내역>

- 가. 사업명 : 영동세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3,488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산 41-77 호의 15필지

◎서울특별시 공고제 165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 1. 영동세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 2. 환지계획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7.

서울특별시

<환지계획변경내역>

가. 사업명 : 영동계 2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0,098.8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압구정동 230-5

호의 205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66 호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 천호,잠실,영동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해서 환지계획을 변경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서류 송달할 것이나, 미수령 되는 토지소유자에 한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7. 7.

서울특별시

<환지변경내역>

가. 사업명 : 천호·잠실·영동 추가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강남구길동 410-1, 412-1, 416-5

강남구석촌동 92-1, 92-2

관악구방배동 454-8,

방배동 684-28

◎서울특별시공고제 169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6조 규정에 의거 K.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 처분된 다음 업체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7. 7.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 992 호

2. 허가일자 : 74.11.4

<p>3. 제조업체명 : 국제전기기업 (주)</p> <p>4. 대표자 : 양 재 권</p> <p>5. 소재지 : 도봉구공농동 230 번지</p> <p>6. 규격번호 : KSC 4202</p>	<p>7. 품 명 : 저압 3상유도전동기 (3ϕ, 4 P, 1HP, 2HP, 3HP)</p> <p>8. 처분일자 : 1977.4.19</p> <p>9. 해제일자 : 1977.7.20</p>
<p>서 울 북 별 시 장</p>	